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용인시장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 4. 26. ~ 2023. 5. 15.(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김 희 영(용인시의회 의원)
- 검사위원 : 황 미 상(용인시의회 의원)
조 현 덕(공인회계사)
윤 용 석(세무사)
이 장 기(세무사)
이 찬 재(前 시의원)
박 창 호(前 공무원)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

용인시장 귀하

2023년 5월 1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로부터 용인시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용인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용인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희 영



검사위원 황 미 상



검사위원 조 현 덕



검사위원 윤 용 석



검사위원 이 장 기



검사위원 이 찬 재



검사위원 박 창 호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1
II. 총 평	2
I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4
1. 용인시 재정의 개황	4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7
(1) 총괄	7
(2) 일반회계	8
(3) 특별회계	12
(4)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6
3. 기금의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20
5. 성과보고서	22
6. 예비비 지출의 결산	24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5
(1) 채권	25
(2) 채무	26
(3) 공유재산	26
(4) 물품	27
(5) 세입세출외현금	27

IV.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28
1.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 관리	29
2. 지방세 환급액 발생 감소 노력 필요	32
3. 체납액 결손처분(정리보류) 관리 철저	34
4.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36
5. 예비비 승인요구 및 집행에 대한 신중한 관리 권고	38
6. 과다 불용액 관리 및 집행 철저	40
7. 국·도비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43
8. 이월사업 과다에 따른 최소화 노력 필요	45
9. 장기계속사업 기한 내 운영 철저 및 계속비사업 검토	47
10.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	49
11.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51
12. 공기관 사업 대행 위탁 시 적정성 검토	53
13. 출연기관 결산 관리감독 철저	55
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	57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조치	57
VI. 우수사례	59
□ 무상양여 누락토지 발굴로 기지급 토지매입비 환급	59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3. 4. 26. ~ 2023. 5. 15. (20일간)

2. 감사위원

- 시 의 원 : 김 희 영 (대표위원)
- 시 의 원 : 황 미 상
- 공인회계사 : 조 현 덕
- 세 무 사 : 윤 용 석
- 세 무 사 : 이 장 기
- 前)시의원 : 이 찬 재
- 前)공무원 : 박 창 호

3. 검사대상 : 2022회계연도 용인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4. 중점 검사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5. 결산검사 진행

-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위주로 검사
- 사업 및 예산집행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 일 시 : 2023. 5. 3.(수) 10:00 ~ 16:00
 - 장소 및 사업명

장소	관련 사업명	비고
기흥구 상갈동 464번지 일원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포곡IC ~ 포곡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일원	송전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사업	

-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원칙으로 제 장부 및 지출증명서 등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검사
- 결산 검사 중 의문 사항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
- 쟁점 사항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

II. 총 평

- 용인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고, 모범적인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2. 12. 9.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구간을 확대하고 그 자격을 구체화하여 용인시의 재정규모 확대에 맞추어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결산검사가 가능하게 된 점은 균형있는 재정발전을 위하여 개선된 부분입니다.
- 또한, 무상양여 누락토지를 발굴하여 기지급한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 받고,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설 중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시설비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한 점을 놓치지 않고 일제점검을 통해 2억 3천만원을 환급받은 점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의 면에서 칭찬해야 할 점입니다.
- 하지만 결산검사 결과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¹⁾의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3% 감소한 7.1%로 재정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초과세입 중 일부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점과 편성된 세출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점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비율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 결산상잉여금(세입-세출)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집행잔액

- 둘째, 세입부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금리 인상·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세수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지출부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액과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이익 향유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셋째, 기금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운용실적을 확인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설치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기를 바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통한 재정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철저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넷째, 지난 2023. 5. 3.(수) 결산검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용인시의 균형있고 발전된 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최근 준공된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시,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건립 계획 등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교통 및 도로공사 시 현장 안전 준수 의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교량 및 터널 등의 사고를 대비한 내부장비 교체 주기를 준수하고 정밀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기를 권고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 종식과 함께할 변화의 방향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부서는 각자의 부문에서 위의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변화하고 발전된 용인시의 미래를 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용인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세입(수입)(A)	3,004,890	3,255,481	3,731,144	3,811,140	4,317,697
	세출(지출)(B)	2,464,391	2,748,371	3,197,148	3,109,906	3,634,682
	결산상 잉여금(A-B)	540,499	507,110	533,996	701,234	683,015
일반회계	세입(A)	2,399,220	2,617,238	3,096,142	3,223,508	3,508,448
	세출(B)	1,996,828	2,270,270	2,708,490	2,656,027	2,955,884
	결산상 잉여금(A-B)	402,392	346,968	387,652	567,481	552,564
특별회계	세입(A)	453,614	468,617	473,608	486,500	488,149
	세출(B)	316,192	308,953	327,286	353,779	358,684
	결산상 잉여금(A-B)	137,422	159,664	146,322	132,721	129,465
기금	수입(A)	152,056	169,626	161,394	101,132	321,100
	지출(B)	151,371	169,148	161,372	100,100	320,114
	결산상 잉여금(A-B)	685	478	22	1,032	986

-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세입은 13.3% 증가, 세출은 16.9%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381,190원입니다.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채무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	무 합 계 (a = b + c + d)	0	0	0	0	0
공	채 (b)	0	0	0	0	0
차	입 금 (c)	0	0	0	0	0
채	무 부 담 행 위 (d)	0	0	0	0	0
지	방 공 기 업 채 무 (e)	0	0	0	0	0
채	무 총 합 계 (f = a + e)	0	0	0	0	0

- 용인시는 2016년 1,302억원의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등 재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구분	재 정 지 표	산 정 방 식	용인시	기 준 단 계	
				주의	심각(위기)
채무관리	예 산 대 비 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예산}} \times 100$	0%	25%초과	40%초과
	채 무 상 환 비 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times 100$	0%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지 방 세 징 수 액 현 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 누적징수액}} \times 100$	114.86%	80%미만	70%미만
자금관리	금 고 잔 액 현 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times 100$	128.65%	20%미만	10%미만
공기업	상 수 도 공 기 업 부 채 비 율	$\frac{\text{부채}}{\text{순자산}} \times 100$	0.95%	400%초과	600%초과
	하 수 도 공 기 업 부 채 비 율	$\frac{\text{부채}}{\text{순자산}} \times 100$	9.59%		

- 또한, 용인시 일반회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산정공식
41.29%	44.97%	48.95%	(자체세입 ÷ 세입결산규모) × 100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

【재정자주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산정공식
50.52%	57.50%	58.58%	(자주재원 ÷ 세입결산규모) × 100 ※ 자주재원 :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재정자주도 :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 우수

(1) 총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합계	3,866,357	3,996,597	3,314,568	682,029
일반회계	3,375,681	3,508,448	2,955,884	552,564
특별회계	490,676	488,149	358,684	129,465
공기업특별회계	329,133	325,144	234,156	90,988
기타특별회계	161,543	163,005	124,528	38,477

구분	현년도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계	0	325,224 (156)	39,371	317,434
일반회계	0	267,309 (156)	37,863	247,392
특별회계	0	57,915	1,508	70,042
공기업특별회계	0	35,708	0	55,280
기타특별회계	0	22,207	1,508	14,762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은 미포함하고, () 별도 표시

○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 예산현액 3조 8,664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9,966억원으로 1,302억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3조 3,14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820억원입니다.
- 이 중 이월사업비 3,252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394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174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C/A)
3,375,681	3,692,265	3,508,448	19,649	164,168	103.9%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세입 예산현액 3조 3,757억원에 대하여 3조 6,923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3조 5,08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 103.9%)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B/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C/B)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D/B)
2022	3,375,681	3,692,265	3,508,448	19,649	109.4%	95.0%	0.5%
2021	2,979,297	3,388,656	3,223,508	31,574	113.7%	95.1%	0.9%
증감	396,384	303,609	284,940	△11,925	△4.3%	△0.1%	△0.4%

- 징수결정액은 2021회계연도 대비 3,036억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2,8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55억원, 평가액 부족 32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508,448	3,508,448	0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처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C/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C/B)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3,375,681	3,692,265	3,508,448	19,648	164,168	103.9%	95.0%
지 방 세	1,189,200	1,433,765	1,329,174	9,042	95,549	111.8%	92.7%
세 외 수 입	278,842	363,299	284,074	10,606	68,618	101.9%	78.2%
지방교부세	46,126	48,351	48,351	0	0	104.8%	100%
조정교부금등	282,235	269,111	269,111	0	0	95.3%	100%
보 조 금	973,236	971,617	971,617	0	0	99.8%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6,042	606,123	606,121	0	1	100%	100%

○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을 보면,

- 지방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수의 37.9%인 1조 3,292억원이 수납되어 전년(1조 1,488억원) 대비 1,8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체 세수의 8.1%인 2,841억원이 수납되어 전년(2,259억원) 대비 5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1.4%인 48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7.7%인 2,691억원, 보조금은 27.7%인 9,716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보조금 반납금 (E)	불용액 (B-C-D-E)
3,163,073	3,375,681	2,955,884	267,465 (156)	37,863	114,46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표시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액 3조 1,63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126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조 3,757억원이고,
- 지출액은 2조 9,559억원으로 전년(2조 6,560억원) 대비 2,9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2,675억원으로 전년(2,126억원) 대비 5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불용액은 1,145억원으로 전년(858억원) 대비 2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955,884	2,955,884	0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회계연도 집행액	2022 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비중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56,027	3,375,681	2,955,884	87.6%	100%	229,857	11.3%
일반공공행정	157,251	408,282	383,342	93.9%	13.0%	226,091	143.8%
공공질서및안전	231,919	33,447	30,595	91.5%	1.0%	△201,324	△86.8%
교육	66,992	94,936	85,404	90.0%	2.9%	18,412	27.5%
문화및관광	93,036	149,443	101,764	68.1%	3.5%	8,728	9.4%
환경	174,980	208,069	183,888	88.4%	6.2%	8,908	5.1%
사회복지	959,476	1,135,011	1,079,009	95.1%	36.5%	119,533	12.5%
보건	54,018	78,753	68,792	87.4%	2.3%	14,774	27.4%
농림해양수산	103,869	106,050	92,692	87.4%	3.1%	△11,177	△1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1,437	79,167	77,751	98.2%	2.6%	26,314	51.2%
교통및물류	375,600	575,229	427,854	74.4%	14.5%	52,254	13.9%
국토및지역개발	132,992	196,823	146,025	74.2%	5.0%	13,033	9.8%
기타	254,457	310,471	278,768	89.8%	9.4%	24,311	9.6%

-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집행액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36.5%), 교통 및 물류(14.5%), 일반공공행정(13%) 분야의 순이며,
- 전년 대비 가장 감소 폭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 대비 2,013억원(86.8%)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지원사업 축소 등입니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합 계	490,676	510,121	488,149	517	21,455
공기업특별회계	329,133	333,576	325,144	112	8,320
수도사업	118,235	119,713	115,653	58	4,002
하수도사업	210,898	213,863	209,491	54	4,318
기타특별회계	161,543	176,545	163,005	405	13,135
의료급여기금	4,365	4,410	4,366	0	44
교통사업	51,269	62,426	52,863	405	9,158
수질개선사업	36,359	36,346	36,346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32	432	432	0	0
경량전철사업	47,343	47,350	47,35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1	101	101	0	0
성북기반시설사업	350	4,284	351	0	3,933
폐기물처리시설	21,325	21,196	21,196	0	0

○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 4,90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8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이고, 전년(100.3%)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7%로 전년(96.2%)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합 계	488,149	488,149	0
공기업특별회계	325,144	325,144	0
수도사업	115,653	115,653	0
하수도사업	209,491	209,491	0
기타특별회계	163,005	163,005	0
의료급여기금	4,366	4,366	0
교통사업	52,863	52,863	0
수질개선사업	36,346	36,346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32	432	0
경량전철사업	47,350	47,35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1	101	0
성북기반시설사업	351	351	0
폐기물처리시설	21,196	21,196	0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실제반납금(D)	불용액 (A-B-C-D)
합 계	490,676	358,684	57,915	1,508	72,569
공기업특별회계	329,133	234,156	35,708	0	59,269
수도사업	118,235	101,915	5,654	0	10,666
하수도사업	210,898	132,241	30,054	0	48,603
기타특별회계	161,543	124,528	22,207	1,508	13,300
의료급여기금	4,365	4,329	0	7	29
교통사업	51,268	42,175	7,857	308	929
수질개선사업	36,359	23,559	10,970	1,193	6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32	234	0	0	198
경량전철사업	47,343	47,003	0	0	3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1	101	0	0	0
성복기반시설사업	350	0	349	0	1
폐기물처리시설	21,325	7,128	3,031	0	11,166

○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 4,907억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587억원이며 전년(3,538억원) 대비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억원으로 전년(515억원) 대비 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불용액은 726억원으로 전년(793억원) 대비 6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합 계	358,684	358,684	0
공기업특별회계	234,156	234,156	0
수도사업	101,915	101,915	0
하수도사업	132,241	132,241	0
기타특별회계	124,528	124,528	0
의료급여기금	4,329	4,329	0
교통사업	42,175	42,175	0
수질개선사업	23,559	23,559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34	234	0
경량전철사업	47,003	47,003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1	101	0
성북기반시설사업	0	0	0
폐기물처리시설	7,128	7,128	0

(4)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결산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327건	208,330 (156)	118건	36,263	23건	45,079
일 반 회 계	용역과제 심의 운영 등 314건	199,320 (156)	집중호우 항구복구 등 108건	34,187	체육진흥시설지원 (용인시민체육 공원조성) 등 18건	33,958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8건	6,559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 등 7건	1,298	-	-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추진 등 5건	2,451	주민지원사업 등 2건	429	생태하천 복원 (신원천 오염 하천정화) 등 3건	8,090
성북기반시설사업 특 별 회 계	-	-	근린공원53호 조성공사 1건	349	-	-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	-	-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2건	3,031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하고, () 별도 표시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이월 사업비 별도 결산으로 제외

○ 2022회계연도의 명시이월은 327건 2,083억원,

사고이월은 118건 363억원,

계속비 이월은 23건 451억원으로 결산되어

○ 총 이월액은 2,897억원으로 전년(2,324억원) 대비 5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 기금의 결산

○ 2022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10,423	230,027	263,815	33,788	440,45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94,491	5,152	8,730	3,578	99,643
	재정안정화 계정	8,489	210,131	210,131	0	218,620
보훈기금		2,283	13	74	61	2,296
자활기금		3,085	4	187	183	3,089
노인복지기금		12,647	△126	598	724	12,5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466	△3,586	113	3,699	1,880
양성평등기금		6,264	47	212	165	6,311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244	9	113	104	3,253
환경보전기금		8,362	121	325	204	8,48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768	△5	3,136	3,141	3,763
식품진흥기금		1,189	△174	188	362	1,015
재난관리기금		5,077	9,209	24,313	15,104	14,286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44,809	9,692	14,537	4,845	54,501
옥외광고발전기금		11,249	△460	1,158	1,618	10,789

○ 2022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 전년도 말 조성액 2,104억원에 당해연도 조성액(2,638억원)과 당해연도 사용액(338억원)의 차액을 공제한 4,404억원입니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63,071	274,336	279,254	210,541	210,423	△5.4
당해연도 조성액	47,795	63,484	50,901	48,924	263,815	53.3
당해연도 사용액	36,531	52,577	119,614	49,042	33,788	△1.9
당해연도말 조성액	274,336	285,243	210,541	210,424	440,450	12.6

○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합 계	1,032	320,068	320,114	986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0	35,189	35,189	0
	재정안정화 계정	0	218,620	218,620	0
보훈기금	0	260	260	0	
자활기금	0	400	400	0	
노인복지기금	0	1,401	1,401	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5,330	5,330	0	
양성평등기금	0	495	495	0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0	250	250	0	
환경보전기금	0	757	757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5,004	5,004	0	
식품진흥기금	0	622	622	0	
재난관리기금	397	28,992	28,533	856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635	20,376	20,881	13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372	2,372	0	

- 검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지출액은 3,201억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의 결산

○ 2022회계연도 용인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전년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6,583,261	15,905,166	678,095	4.3%
I. 유동자산	1,235,731	1,035,318	200,413	19.4%
II. 투자자산	138,090	127,687	10,403	8.1%
III. 일반유형자산	703,046	703,226	△180	0%
IV. 주민편의시설	3,976,547	3,843,273	133,274	3.5%
V. 사회기반시설	10,514,028	10,183,109	330,919	3.2%
VI. 기타비유동자산	15,819	12,553	3,266	26.0%
부 채	193,448	181,877	11,571	6.4%
I. 유동부채	63,788	50,797	12,991	25.6%
II. 장기차입부채	0	0	0	0%
III. 기타비유동부채	129,660	131,080	△1,420	△1.1%
순 자 산	16,389,813	15,723,289	666,524	4.2%
I. 고정순자산	14,698,754	14,234,397	464,357	3.3%
II. 특정순자산	350,179	124,746	225,433	180.7%
III. 일반순자산	1,340,880	1,364,146	△23,266	△1.7%

○ 2022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6조 5,833억원으로 전년도 15조 9,052억원보다 6,781억원(4.3%)이 증가하였고, 이는 사회기반시설 3,309억원(3.2%), 유동자산 2,004억원(19.4%)과 주민편의시설 1,333억원(3.5%)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022회계연도 말 부채는 1,934억원으로 전년도 1,819억원보다 115억원(6.4%) 증가하였고, 이는 유동부채 130억원(25.6%)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나)	1,137,621	1,045,904	91,717	8.8%
가. 사업총원가	2,290,943	2,286,037	4,906	0.2%
나. 사업수익	1,153,322	1,240,133	△86,811	△7.0%
II. 관리운영비	304,090	282,393	21,697	7.7%
III. 비배분비용	95,577	93,140	2,437	2.6%
IV. 비배분수익	128,230	62,917	65,313	103.8%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409,058	1,358,520	50,538	3.7%
VI. 일반수익	1,819,208	1,693,284	125,924	7.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410,150	△334,764	△75,386	22.5%

- 2022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조 2,909억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1,533억원을 차감한 1조 1,376억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 과목은 사회복지 2,915억원과 교통 및 물류 2,563억원입니다.
- 또한, 2022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918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1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294억원과 기타비배분비용 66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064억원과 기타비배분수익 21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비용-수익)는 △4,102억원으로 전년도의 △3,348억원보다 754억원 감소하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5

성과보고서

- 용인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1개의 전략목표와 272개의 정책사업목표, 5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실국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및 달성수 (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31	272	524	457	67	87.2%
시민소통관	1	1	2	2	0	100%
감사관	1	1	3	3	0	100%
공보관	1	2	4	4	0	100%
정책기획관	1	2	3	3	0	100%
법무담당관	1	3	6	5	1	83.3%
청년담당관	1	3	6	6	0	100%
도시기획단	1	4	5	5	0	100%
시민안전관	1	2	5	5	0	100%
자치행정실	1	16	35	31	4	88.6%
재정국	1	7	20	17	3	85%
교육문화국	1	13	23	20	3	87%
복지여성국	1	16	32	29	3	90.6%
일자리산업국	1	19	39	36	3	92.3%

실국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및 달성수 (B)	미달성 수	달성률 (B/A)
도시정책실	1	7	14	13	1	92.9%
주택국	1	5	15	15	0	100%
교통건설국	1	12	22	20	2	90.9%
미래산업추진단	1	3	4	3	1	75%
의회사무국	1	1	3	3	0	100%
농업기술센터	1	3	9	8	1	88.9%
처인구보건소	1	4	8	8	0	100%
기흥구보건소	1	4	10	10	0	100%
수지구보건소	1	3	7	7	0	100%
도서관사업소	1	7	16	16	0	100%
환경위생사업소	1	9	15	12	3	80%
푸른공원사업소	1	4	9	6	3	66.7%
상수도사업소	1	3	3	3	0	100%
하수도사업소	1	1	2	1	1	50%
차량등록사업소	1	1	3	2	1	66.7%
처인구 분청	1	40	71	57	14	80.3%
기흥구 분청	1	41	69	56	13	81.2%
수지구 분청	1	35	61	51	10	83.6%

-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액은 3조 804억원으로 전년(2조 7,706억원) 대비 3,0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성과지표 달성률은 전체 524개의 성과지표 중 457개를 달성하여 87.2%로, 전년(87.4%) 대비 0.2% 하락하였습니다.

6 예비비 지출의 결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 계 명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일반회계	30	3,516	2,761	0	755	-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 6.28.~7.1. 호우발생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부족분 등

○ 예비비 결산 결과

-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6.28.~7.1. 호우발생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부족분 등 총 30건으로
- 예비비 예산 386억원 중 35억원을 집행 결정하여 28억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2022회계연도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85,282	9,376	94	94,564
일반회계	6,519	-	-	6,519
기타 특별회계	78,255	9,309	-	87,564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78,255	9,309	-	87,564
기 금	508	67	94	481
자활기금	508	67	94	481

-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46억원으로, 전년도 말의 853억원에 비하여 93억원(10.9%)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의 종류별 현황은
경량전철사업 운영비 중 금전대여 방식 지원에 따른 채권 876억원,
공무원학자대여금 65억원, 주택용자 2억원 등입니다.

(2) 채무

- 2022년도 말 지방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전액 상환 이후 발생 내역 없음)

(3) 공유재산

-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11,339,129	1,986,646	245,310	13,080,465	
행정 재산	소 계	11,307,017	771,783	232,658	11,846,142
	공 용 재 산	1,025,454	53,730	10,523	1,068,661
	공 공 용 재 산	10,083,231	712,288	219,556	10,575,963
	기 업 용 재 산	183,915	2,577	1,466	185,026
	보 존 용 재 산	14,417	3,188	1,113	16,492
일 반 재 산	32,112	301	12,652	19,761	
건설중인재산 ²⁾		1,214,562		1,214,562	

- 2022년도 말 공유재산은
 - 토지는 39,464필지, 2,893만㎡, 7조 8,772억원,
 - 건물은 774동, 89만㎡, 1조 9,126억원이며,
 - 기타 2,883만건, 3조 2,907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총 13조 805억원이며,
2021년도 말 대비 1조 7,4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 22.7월)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건설중인 재산' 을 반영

(4) 물품

○ 2022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계	수 량	3,212	343	68	3,487
	금 액	26,771	4,442	881	30,332

○ 202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487개 303억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275개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소계	10,936	△253	111,012	111,265	10,683
	장기	5,759	△245	715	960	5,514
	단기	5,177	△8	110,297	110,305	5,169
보증금	소계	2,235	△795	172	967	1,440
	장기	1,591	△179	172	351	1,412
	단기	644	△616	0	616	28
보관금	소계	8,545	617	107,668	107,051	9,162
	장기	4,168	△66	543	609	4,102
	단기	4,377	683	107,125	106,442	5,060
잡종금등 기타		156	△75	3,172	3,247	81

○ 2022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07억원으로
2021년도 말 109억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 반환(8억)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IV.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소관부서
1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 관리	총괄부서 : 예산과, 세정과 해당부서 : 전부서 공통
2	지방세 환급액 발생 감소 노력 필요	총괄부서 : 세정과
3	체납액 결손처분(정리보류) 관리 철저	총괄부서 : 징수과 협조부서 : 세정과
4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교통정책과,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5	예비비 승인요구 및 집행에 대한 신중한 관리 권고	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6	과다 불용액 관리 및 집행 철저	불용액 발생부서 공통
7	국·도비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보조금 집행부서 공통
8	이월사업 과다에 따른 최소화 노력 필요	총괄부서 : 예산과 해당부서 : 이월사업 집행부서 공통
9	장기계속사업 기한 내 운영 철저 및 계속비사업 검토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10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	환경과
11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총괄부서 : 예산과 해당부서 : 기금관리부서 공통
12	공기관 사업 대행 위탁 시 적정성 검토	총괄부서 : 예산과 해당부서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부서 공통
13	출연기관 결산 관리감독 철저	총괄부서 : 예산과 해당부서 : 출연기관 관리부서 공통

1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 관리

□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잉여금내역			순세계 잉여금 (C)	순세계 잉여금 비율 (C/A)
				잉여금 계 (A-B)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2022	3,375,681	3,508,448	2,955,884	552,564	267,309 (156)	37,863	247,392	7.1%
2021	2,979,297	3,223,508	2,656,027	567,481	209,105 (3,503)	24,873	333,503	10.3%
2020	2,981,038	3,096,141	2,708,490	387,651	165,276 (1,454)	30,905	191,470	6.2%
2019	2,545,785	2,617,237	2,270,270	346,967	150,393	12,687	183,887	7.0%
2018	2,333,787	2,399,220	1,996,828	402,392	194,853	8,381	199,158	8.3%
2017	2,052,895	2,133,858	1,769,421	364,437	174,481	5,882	184,074	8.6%
2016	2,010,608	2,063,585	1,783,219	280,366	150,141 (67)	8,452	121,773	5.9%
2015	1,915,593	1,962,857	1,639,395	323,462	127,503 (1,546)	5,801	190,158	9.7%
2014	1,680,213	1,724,162	1,461,317	262,845	141,277	10,623	110,945	6.4%
2013	1,598,867	1,642,562	1,463,750	178,812	89,786 (604)	7,273	81,753	5.0%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은 미포함하고, ()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최근 3년)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A=B+C)	초과세입금 (B)	집행잔액 (C)		
			비중(B/A)	비중(C/A)	
2022	247,392	132,767	53.7%	114,625	46.3%
2021	333,503	244,211	73.2%	89,292	26.8%
2020	191,470	115,103	60.1%	76,367	39.9%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유사 市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잉여금내역				순세계 잉여금 비율 (C/A)
				잉여금 계(A-B)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C)	
용인시	3,375,681	3,508,448	2,955,884	552,564	267,309 (156)	37,863	247,392	7.1%
수원시	3,453,973	3,539,115	3,051,213	487,902	226,170 (576)	46,195	215,537	6.1%
고양시	3,072,245	3,181,348	2,695,212	486,136	183,142 (36,200)	36,477	266,517	8.4%
성남시	4,136,442	4,194,597	3,702,857	491,740	233,047 (7,697)	48,223	210,470	5.0%
화성시	3,620,452	3,729,387	3,015,247	714,140	437,074 (869)	53,270	223,796	6.0%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은 미포함하고, () 별도 표시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세입과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한 잔액을 나타내며,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함.
-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3,335억원 대비 861억원 감소한 2,474억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7.1%로 전년도 10.3% 보다 3.2% 감소함.
-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사유는 집행잔액은 전년 893억원 대비 253억원 늘어났으나, 초과세입이 전년도보다 1,11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³⁾은 6.56%이었고, 2022회계연도 예산 규모가 유사한 타 市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고양시(8.4%)를 제외한 수원시(6.1%), 성남시(5.0%), 화성시(6.0%)가 용인시(7.1%) 보다 낮은 수준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의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적시성 및 재정관리의 계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3.2% 감소하여, 재정의 효율성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19% 증가함. 이는 당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임.
향후 사업추진 부서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적기 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적절한 추가경정 예산 반영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 지방세 환급액 발생 감소 노력 필요

□ 세입금 환급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2022	33,007	962 (2.9%)	3,845 (11.6%)	2,395 (7.3%)	1,662 (5.0%)	9,536 (28.9%)	93 (0.3%)	2,035 (6.2%)	12,479 (37.8%)
2021	57,208	333 (0.6%)	4,651 (8.1%)	1,814 (3.2%)	1,769 (3.1%)	10,933 (19.1%)	10,293 (18.0%)	1,400 (2.4%)	26,015 (45.5%)

□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환급사유	2022년		2021년		증감		주요 세목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총 계	212,812	21,004	152,434	23,859	60,378	△2,855	
행정기관착오	167	39	54	8	113	31	재산세
납세자권리구제	141	1,023	135	513	6	510	지방소득세
납세자착오	1,813	754	2,043	945	△230	△191	지방소득세
차량, 미등기	23,317	1,631	23,945	1,734	△628	△103	자동차세
국세경정	177,088	6,757	119,529	7,149	57,559	△392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196	90	59	833	137	△743	재산세
법인정산	738	1,526	674	1,249	64	277	지방소득세
기타	9,352	9,184	5,995	11,428	3,357	△2,244	지방소득세

※ 기타 사유 : 타시군환급, 지자체간 세입금 경정, 연말정산 등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및 제62조(지방세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2022회계연도 용인시 세입금 환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환급총액은 242억원이 줄어들었으나,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3억 3,300만원에서 9억 6,2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세부현황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건수 및 환급금이 전년도보다 매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은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업무 추진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
- 또한 총괄하는 세입부서는 정기적인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3

체납액 결손처분(정리보류) 관리 철저

□ 최근 5년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불납 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2022	19,649	132	318	437	210	15,372	5	3,172	3
2021	31,574	450	32	354	455	29,580	43	632	28
2020	40,203	-	-	485	849	35,569	-	3,300	-
2019	12,408	1	-	499	843	9,101	-	1,756	208
2018	22,705	2,782	3	458	255	16,157	-	3,007	43

□ 유사 市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비율	
			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결손비율 (C/A)	미수납비율 (D/A)
용인시 (22년)	3,375,681	3,692,265	3,541,455	33,007	3,508,448	19,649	164,168	0.5%	4.5%
용인시 (21년)	2,979,297	3,388,656	3,280,716	57,208	3,223,508	31,574	133,574	0.9%	3.9%
수원시 (21년)	3,350,541	3,537,744	3,467,625	40,237	3,427,388	8,210	102,146	0.2%	2.9%
고양시 (21년)	2,994,484	3,273,087	3,133,013	21,234	3,111,779	24,403	136,905	0.8%	4.2%
성남시 (21년)	3,276,012	3,950,419	3,866,983	39,525	3,827,458	13,944	109,017	0.4%	2.8%
화성시 (21년)	3,136,603	3,428,752	3,340,764	56,062	3,284,702	12,248	131,802	0.4%	3.8%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금을 정리보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야 함.
- 2022회계연도 용인시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2021년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회계 기준 316억원에서 196억원으로 120억원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결손처분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은 전년보다 오히려 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결손처분(정리보류)이라는 제도가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함. 따라서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자도 다각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효의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징수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체납액 징수 노력과 더불어 신세원 발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타 市의 세원양성기법(드론을 이용한 지목변경 확인, 건설현장 전산시스템인 키스콘을 이용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징수)를 참고하여, 향후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각종 산업단지 조성 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세원 발굴·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4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세입구분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비율 (B/A)	비고
합 계		1,831,996	1,634,640	20,054	177,302	89.2%	
일반회계	소 계	1,797,064	1,613,248	19,649	164,167	89.8%	
	지 방 세	1,433,765	1,329,174	9,042	95,549	92.7%	
	세외수입	363,299	284,074	10,607	68,618	78.2%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34,932	21,392	405	13,135	61.2%	

【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세입구분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비율 (B/A)	비고
일반회계	소 계	363,299	284,074	10,607	68,618	78.2%	
	경상적세외수입	98,143	97,259	-	884	99.1%	
	임시적세외수입	216,535	168,651	10,561	37,323	77.9%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8,621	18,164	46	30,411	37.4%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 계	29,126	19,562	405	9,159	67.2%	
	경상적세외수입	4,208	4,207	-	1	100%	
	임시적세외수입	10,273	2,947	405	6,921	28.7%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4,645	12,408	-	2,237	84.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 계	70	26	-	44	36.8%	
	경상적세외수입	2	2	-	-	100%	
	임시적세외수입	51	13	-	38	24.5%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7	11	-	6	65.6%	
성북기반시설 사업특별회계	소 계	3,971	38	-	3,933	1.0%	
	경상적세외수입	1	1	-	-	100%	
	임시적세외수입	3,969	37	-	3,933	0.9%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	-	-	-	

※ 미수납액이 있는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만 작성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지방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2.7%로 전년 대비(92.5%) 양호한 수준이고,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 비율은 78.2%로 전년도(75.5%)와 비교하여 상승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 비율은 61.2%로 상대적으로 낮음.
-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세입구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납률이 낮은 점은 각 기타특별회계 세입관리 부서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과징금,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세외수입보다 과목 특성상 징수율이 낮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전체 미수납액은 131억원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과태료 등을 담당하는 기타특별회계 해당 부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독촉장) 발송, 재산조회,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예비비 승인요구 및 집행에 대한 신중한 관리 권고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승인 건수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비고
합계	30건	26,704	3,516	2,761	-	755	
일반예비비	7건	21,014	1,951	1,585	-	366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3건	5,690	1,565	1,176	-	389	

□ 예비비 불용비율 5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불용 비율	불용사유
1	대중교통과	버스비상수송 대책 수립	400	42	358	89.5%	노선버스 파업 철회에 따른 계약해지
2	체육진흥과	용인미르스타디움 운영	470	117	353	75.1%	화재복구 공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
3	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지원	2	-	2	100%	-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단 업무용 전화기 구입 비용
4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지원	2	-	2	100%	- 연초 사무용전화기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구입 불가능 및 하반기 코 로나19 재택치료단 해 체 등으로 잔액 발생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승인 건수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비고
2022년	30건	26,704	3,516	2,761	-	755	미지출 2건
2021년	49건	25,347	13,511	12,425	31	1,055	미지출 2건
2020년	24건	27,849	16,156	14,777	-	1,379	미지출 없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음.
-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집행은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나, 2021년 미지출 2건 발생과 비교하여 2022년 미지출 2건과 불용비율 50% 이상 사업 2건이 발생하였고, 파업철회에 따른 계약해지, 공사방식 변경 등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물품 수급상황 등은 예비비 승인 요구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부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보다 정확한 사업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추계하여 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과다 불용액 관리 및 집행 철저

□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비율 (D/A)
2022	합계	3,537,224	3,080,412	289,672 (156)	167,140	4.7%
	일반회계	3,375,681	2,955,884	267,465 (156)	152,332	4.5%
	기타 특별회계	161,543	124,528	22,207	14,808	9.2%
2021	합계	3,129,230	2,770,623	232,394 (3,503)	126,213	4.2%
	일반회계	2,979,297	2,656,027	212,608 (3,503)	110,662	3.8%
	기타 특별회계	149,933	114,596	19,786	15,551	10.4%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로 별도 표시

※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과 불용액을 포함함

[2022회계연도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차액 (C=A-B)	차액비율 (C/A)
합계	3,537,224	3,080,412	456,811	12.9%
인건비	253,451	243,894	9,557	3.8%
물건비	150,238	136,231	14,007	9.3%
경상이전	1,725,371	1,645,813	79,558	4.6%
자본지출	957,548	639,104	318,444	33.3%
용자및출자	19,309	19,309	0	0%
내부거래	362,820	362,820	0	0%
예비비및기타	68,487	33,242	35,245	51.5%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임

※ 해당 차액에는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함.

□ 1천만원 이상 전액 집행잔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 계	24건		1,427,328	1,427,328
시민안전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1,125	31,125
자치분권과	행정구역 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자치분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타보상금	17,500	17,500
문화예술과	공예문화 육성	기타보상금	10,000	10,000
문화예술과	무용협회 정기공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문화예술과	용인 전통무용 공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체육진흥과	수지아르피아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시설비	15,000	15,000
관광과	청년 김대건길 관광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20,000	20,000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기타보상금	15,000	15,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0	15,000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05,200	205,200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상담관리)	사무관리비	30,000	30,000
축산과	가축방역 관리	사무관리비	50,000	50,000
축산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시설비	20,000	20,000
산림과	대지산~범화산 단절등산로 연결	시설비	400,000	400,000
도시재생과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시설비	199,073	199,073
공공건축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22,000	22,000
의정담당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국외업무여비	30,000	30,000
의정담당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국제화여비	10,000	10,000
의정담당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의원국외여비	113,100	113,100
의정담당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110,000	110,000
처인구 자치행정과	체육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14,330	14,330

※ 예비비 및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제외함.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673억원으로 전년 4.2% 대비 근소하게 증가하였음. 1천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미사용한 사업은 15개 부서, 24건으로 확인되며, 2022회계연도의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높은 집행잔액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음.
-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부서의 인원 수 비례와 편성단가로 통상 산출 편성되는 예산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 자본이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그 속성상 단기간인 1회계연도 안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도 그 차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부서는 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추계하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추진 전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감액을 통하여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7

국·도비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잔액비율 (D/A)
2022년	1,044,057	1,042,438	956,394	46,622 (155)	39,422	3.8%
2021년	1,117,284	1,115,335	1,049,463	40,268	25,604	2.3%
2020년	1,232,294	1,231,506	1,171,063	28,839	31,604	2.6%

※ 국비,도비를 포함한 현황임.(국·도비와 매칭된 시비는 제외),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의 당해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현황임.

□ 보조금 미집행을 50% 이상 현황(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이월 구분	부서명	사업명	목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미집행을 (%)
합계			14건	7,444	2,878	4,566	61%
일반회계	당해	관광과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89	18	71	80%
일반회계	당해	경기도종합체육 대회추진단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500	170	330	66%
일반회계	당해	아동보육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15	60	255	81%
일반회계	당해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133	526	607	54%
일반회계	당해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1,366	576	790	58%
일반회계	이월 (명시)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205	-	205	100%
일반회계	당해	축산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00	-	100	100%
일반회계	당해	산림과	산림작물생산단지	71	18	53	75%
일반회계	이월 (명시)	기후에너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설치 지원사업	351	-	351	100%
일반회계	이월 (사고)	기후에너지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184	1,005	1,179	54%
일반회계	당해	하수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97	22	75	77%
일반회계	당해	치인구 사회복지과	경로당 냉방비 지원	85	25	60	71%
교통사업 특별회계	당해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68	70	98	58%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 (명시)	환경과	주민지원사업	780	388	392	50%

※ 국·도비와 매칭한 자체재원을 포함한 현황임.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 후 반납할 용인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394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256억원보다 138억원이 증가하였고,
- 증가한 원인을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및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코로나19 감염 감소세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등 불가피한 점도 있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중 3건은 보조금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고, 50% 이상 미집행 사업도 14개에 달하는 점은 보조금 계획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의거 다음 해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납기한까지 계산한 이자를 사업비로 반납하여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재정부담이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는 보조금 수립 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정한 금액의 보조금 사업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8

이월사업 과다에 따른 최소화 노력 필요

□ 최근 3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 비율 (C/A)
			소계 (C=②+③+④)	명시이월 (②)	사고이월 (③)	계속비 이월(④)	
2022	3,537,224	3,080,412	289,672 (156)	208,330 (156)	36,263	45,079	8.2%
2021	3,129,230	2,770,623	232,394 (3,503)	167,989	35,169 (1,192)	29,236 (2,311)	7.4%
2020	3,111,203	2,811,293	176,888 (1,510)	129,019 (1,416)	28,702 (94)	19,167	5.7%

※ 자금없는 이월액은 포함하고, ()로 별도 표시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현황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 】

이월구분	합계	일반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성북기반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명시이월	327건	314건	8건	5건	-	-
사고이월	118건	108건	7건	2건	1건	-
계속비이월	23건	18건	-	3건	-	2건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2회계연도 집행 결과 전체 이월액은 2,89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24억원 보다 573억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8.2%로 전년도 7.4% 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같은 사항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한 바 있으며, 개선되지 못한 사유 또한 준공일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연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점이 이월사업이 과도한 사유로 확인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사업추진부서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부서별 사업기간 등에 대해 정확한 추계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연말 보조금 교부가 예상되는 사업 제외)은 조기에 발주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이행하면서 각종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했는지와 행정적인 시간 누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자가진단(피드백)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장기계속사업 중 3년이 초과된 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공사명	공사(예정) 기간	최종 계약금액	2022년 사업비 집행 현황			
			소계 (a+b+c)	당해예산 (a)	명시이월 (b)	사고이월 (c)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18.01.02. ~ 23.05.12.	13,029	3,504	1	2,525	978
고림지구 주변도로 (중1-3호 개설공사)	20.11.20. ~ 23.05.30.	1,504	977	400	-	577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56호 개설공사	19.07.15. ~ 23.05.30.	6,738	6,135	2,200	2,384	1,551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12.19. ~ 23.06.30.	6,415	3,496	2,616	739	141

※ 계속비 사업은 제외함.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 계약 및 계속비계약)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대부분 12개월 또는 24개월로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연도 안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통해 다음 해로 넘겨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음.
-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인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준공되지 못하고, 그 이상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추진 첫 단계인 실시설계용역 발주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더 많은 사업이 당초에 예상한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연장되는 사유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 및 보상의 지연,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되는 점 등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전년도말 예산이 확정된 후 다음해 연초 유관기관 협의와 사전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바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하반기가 되어서야 공사발주를 하면서 연말에 계약만 진행한 후 예산이월을 요청하고 그 다음해 동절기 공사중지로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사업의 추진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장기계속사업은 대부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위의 지적인 사항과 같이 총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사업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각종 경비 등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공사 착공 전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또한, 기본계획부터 공사 준공까지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중 여러 해 걸리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 중 각종 변수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장기계속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0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통계목	예산현액(A)			원인 행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잔액 비율 (D/A)
		예산액	성립후 증감	계					
2022	합 계	7,795	779	8,574	7,353	6,615	913	1,046	12.2%
	공공운영비	26	-	26	25	25	-	1	3.8%
	시설비	6,572	772	7,344	6,240	5,509	906	929	12.7%
	감리비	7	7	14	7	-	7	7	50.0%
	자산및물품 취득비	1,190	-	1,190	1,081	1,081	-	109	9.2%
2021	합 계	6,458	476	6,934	6,113	5,902	780	252	3.6%
	공공운영비	27	-	27	26	26	-	1	3.7%
	시설비	5,410	476	5,886	5,150	4,939	780	167	2.8%
	감리비	19	-	19	16	16	-	3	15.8%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2	-	1,002	921	921	-	81	8.1%

【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지원					직접지원	
		소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예산 현액	사업비	8,575	8,575	198	7,156	-	1,221	-
	집행액	6,616	6,616	179	6,147	-	290	-
	잔 액	1,959	1,959	19	1,009	-	931	-
	차기이월	913	913	-	422	-	491	-
	반납액	1,046	1,046	19	587	-	440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 규제기준 강화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후 전액 국비(기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임.
- 2022회계연도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 예산현액 86억원 중 1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부된 자금의 12.2%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해당 잔액은 모두 다음연도에 국고 반납해야 하므로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 중 시설비 등은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그 취지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변경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길 바람.

11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2022 회계연도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금명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조성액 (B)	당해연도 조성총액 (C=A+B)	당해연도 사용액 (D)	사용 비율 (E=D/C)	당해연도 말조성액 (F=C-D)
예산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6	94,491	8,730	103,221	3,578	3.5%	99,643
예산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8,489	210,131	218,620	-	0%	218,620
복지 정책과	보훈기금	2000	2,283	74	2,357	61	2.6%	2,296
복지 정책과	자활기금	2004	3,085	187	3,272	183	5.6%	3,089
노인 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996	12,647	598	13,245	724	5.5%	12,521
노인 복지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0	5,466	113	5,579	3,699	66.3%	1,880
여성 가족과	양성평등기금	2001	6,264	212	6,476	165	2.6%	6,311
자원 육성과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2005	3,244	114	3,358	105	3.1%	3,253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2000	8,362	325	8,687	204	2.4%	8,483
자원 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07	3,768	3,136	6,904	3,141	45.5%	3,763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02	1,189	188	1,377	362	26.3%	1,015
시민 안전관	재난관리기금	1997	5,077	24,312	29,389	15,103	51.4%	14,286
도시 재생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07	44,809	14,537	59,346	4,845	8.2%	54,501
도시 기획단	옥외광고발전기금	2010	11,249	1,158	12,407	1,618	13.0%	10,789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용인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사용액 그리고 기금조성 잔액을 살펴본 결과 4개의 기금에서 5% 미만의 저조한 사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저조한 사용실적이 있는 기금은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현액과 사업규모가 작은 기금은 통합하고,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기금을 폐지하는 등 법정기금 외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기 바람.

□ 2022년 용인도시공사 공공위탁 사업 현황(시설관리 제외)

(2022.12.31.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명	주요 대행사업명	사업건수 (건)	총사업비	교부액	비고
합 계		101건	700,415	502,595	
공공건축과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2건	141,725	7,099	
공원조성과	고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건	121,318	121,318	
도로관리과	포곡 중1-50호 개설공사(기부 대양여사업) 등	2건	5,200	5,200	
도시개발과	수지고 인근 교통개선공사 및 생태터널 철거공사 등	2건	4,472	4,472	
도시재생과	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1건	97,257	86,541	
생태하천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공유 플랫폼 외 3) 등	3건	24,626	24,009	
서부도서관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건	2,645	2,645	
여성가족과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건	49,596	49,596	
플랫폼시티과	GTX용인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1건	150	150	
하수시설과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건	58,986	44,078	
처인구 도로과	이동면 상리선(리도210호) 개설공사 등	48건	93,395	83,393	
기흥구 도로과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중3-62호 개설공사 등	17건	60,164	52,114	
수지구 건설도로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공사 등	6건	40,881	21,980	

※ 해당 현황은 2022.12.31. 사업 기준으로 결산상 집행 총계와 불일치함.

□ 유사 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비고
용인시(22년)	87,886	85,514	1,733	639	
용인시(21년)	80,766	78,058	2,372	336	
수원시(21년)	33,554	30,837	2,615	102	
고양시(21년)	19,274	19,197	-	77	
성남시(21년)	5,353	5,313	-	40	
화성시(21년)	45,256	38,470	6,777	9	

※ 일반회계 기준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편성하며,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를 포함하여 공기관에 2022년 대행사업비를 집행한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855억원이고, 이는 재정 현황이 유사한 다른 市의 2021년 집행액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은 집행액임.
- 용인시의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중 '교통 및 물류'는 2021년 기준 4,538억원(15.1%), 2022년 기준 5,170억원(15.6%)으로 2021년 전국 타 시·군 평균인 7.14%⁴⁾ 보다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사업을 시의 한정된 인원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은 위탁 대행사업의 타당한 사유로 보임.
-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규정에 의거, 용인시와 공기관 간 사업추진에 따른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위탁사업비용과 함께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용인시 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부서와 각 사업추진부서는 용인도시공사 등 공기관과 대행사업 위·수탁계획 수립 시 자체추진 대비 효율성,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불필요한 재원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결정하여야 하며, 용인도시공사등 공기관은 위탁사업보다 자체사업 추진 계획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공기업에 위탁 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2021.03)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직관리부서는 조직운용 방향 수립 시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하길 바람.

4)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통계자료

13 출연기관 결산 관리감독 철저

□ 출연기관 운영성과표 사업수익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합 계	52,050,895	39,175,666	12,875,229 (32.9%)
(재)용인시정연구원	2,424,307	2,382,198	42,109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1,417,087	1,260,637	156,450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11,442,614	8,755,740	2,686,874
(재)용인시장학재단	1,005,915	678,137	327,778
(재)용인문화재단	24,685,248	17,174,367	7,510,881
(재)용인시축구센터	4,154,179	4,312,507	△158,328
(재)용인시산업진흥원	6,921,545	4,612,080	2,309,465

□ 출연기관 운영성과표 사업외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합 계	1,435,362	496,044	939,318 (189.4%)
(재)용인시정연구원	13,787	42,563	△28,776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396	11,508	△11,112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17,785	230,547	△212,762
(재)용인시장학재단	-	9,910	△9,910
(재)용인문화재단	738,506	190,813	547,693
(재)용인시축구센터	647,498	10,701	636,797
(재)용인시산업진흥원	17,390	2	17,388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는 (재)용인시정연구원 등 7개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각 기관별로 결산을 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출연기관의 운영성과표를 살펴보면, 출연금 수입 등에 의한 사업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32.9% 증가하였고, 유형자산폐기손실 및 잡손실 등에 의한 사업외비용 또한 18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외비용 증가 내용 중 용인시축구센터의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축구센터 이전으로 인한 유형자산폐기손실, 용인문화재단의 청덕도서관 운영주체 변동에 따른 자산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비영리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출연기관은 대부분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물품의 경우 불용품 매각을 통해 폐기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운영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함. 소관부서는 출연기관의 예산부터 결산까지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결산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용역,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출연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조치

□ 전년도 권고사항

- 장기 보관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및 사업 종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반환처리하거나 세입 처리 하시기 바람.

□ 조치결과 및 검토

-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실시('22. 9. 2. ~ 11. 15.)
 - 정리대상
 - ① 수기장부 이월금(2008년 이전 장부) : 15억 9,800만원
 - ②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 보관금 : 2,700만원
 - ③ 반환기한 5년 이내 보관금 : 57억 9,100만원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반환 기한이 경과 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로 귀속 조치하여야 함.

- 일제정리 결과 세부내역이 불분명한 수기장부상 이월금 및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장기보관금 17억 8,300만원 미처리 확인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공시송달 공고('23. 3. 20. ~ 4. 4.)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17억 8,300백만원 세입처리 완료('23. 4. 16.)

□ 향후 계획

- 매년 말 반환기한이 도래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채권소멸 대상자에게 적극적 사전통지를 하여 적기 반환 및 세입처리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음.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및 세입처리 내역】

(단위: 천원)

종 류		세입처리 내역	2022 결산액
총 계		1,783,219	10,683,401
보 증 금	입 찰 보 증 금	28,312	28,384
	계 약 보 증 금	1,470	314,296
	하 자 보 수 보 증 금	32,647	1,032,762
	기 타	0	64,931
	소 계	62,429	1,440,373
보 관 금	농 지 일 시 사 용 허 가	96,929	96,929
	적 지 복 구 비	487,131	3,073,623
	원 상 복 구 비	571,258	578,707
	채 권 압 류 금	5,629	111,907
	이 자 수 입	539,093	788,368
	보 험 료	20,729	151,642
	기 타	0	4,361,431
	소 계	1,720,769	9,162,607
잡 증 금	기 타 수 입 등	21	66,449
	기 타	0	13,972
	소 계	21	80,421

Ⅵ. 우수사례

□ 무상양여 누락토지 발굴로 기지급 토지매입비 32억 환급

□ 개 요

- 2003년도 구갈레스피아 설치사업 당시 해당 토지는 무상양여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때 소유권 이전이 누락됨.
- 2021년 12월 레스피아 개량사업 시 매매계약 및 보상액이 지급됨.
- 2022년 1월 무상양여 관련 서류를 어렵게 찾아내 재검토를 요구한 결과 기지급된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고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 구갈 레스피아 사업 현황

- 위 치 :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 면 적 : 3,584m²
- 추진현황
 - 2003년 ~ 2005년 : 구갈 레스피아 설치 사업
 - 2017년 ~ 2023년 :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

□ 추진현황

- 2021. 12. :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시 국유재산 매매계약 및 보상액 지급 (용인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2. 1. : 과거 무상양여 국유재산 소유권이전 검토 요청 (市 재산관리과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2. 4. : 국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 2022. 6. : 국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환급액 세액 조치(하수시설과)
- 2022. 6.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재산관리과)

□ 추진결과 : 국유재산 토지 매입비 32억 환급 및 소유권 확보

□ 기대효과 :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중 상당 부분을 환급받아 예산 절감